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
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3. 안 건 요 지:별 첨

4. 검 토 의 견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5월 20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 춘 용

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9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, 육아휴직시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「지방공무원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함(안 제3조의2).
- 나.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의2).
- 다.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,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「지방공무원법」의 개정과 관련 휴직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, 다만, 조례 제7조(직권면직)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정비는 「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전부개정 시점에 맞추어 철저한 관리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.